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9일, 안규백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규백 의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

의·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기소되어 현재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을 보직해임하였음.

그러나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험적인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비상계엄당시에 깊게 관여하였던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률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보직해임된 장교가 일정 기간 이상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어 군에서의 징계, 조사·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상급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보직해임된 때에는 해당 계급 장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휘공백 장기화로 인한 안보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1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징계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인 장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함.

장성급 장교가 직위해제, 해임 또는 면직되더라도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여, 군 내부에서 수사 및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장성급 장교와 비장성급 장교 간의 계급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원회·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규백의원안 중 국방부차관을 제외한 대장 계급의 장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가 직위해제, 해임 또는 면직되더라도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